

# 사단법인 일일시호일

## 회원 총회 회의록

개 최 일 시	2023년 6월 30일 15시 00분	소집통보일	2023년 6월 20일
회 의 장 소	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 대회의실		
참 석 자	회원 총 83명 중 46명 참석 / 19명 위임		
의 제	1. 정관개정의 건		

### 회 의 내 용

의장인 대표권 있는 이사 김형규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법정 정족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.

#### 안건 1. 사단법인 일일시호일 정관 개정의 건

현 행(구)	개 정(신)
<p>제4조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주노동자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각종 지원사업</li> <li>2. 다문화가정 자녀장학금 및 생필품 등 각종 지원사업</li> <li>3.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</li> <li>4.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복지·지원 등 관련 시설 운영 사업</li> <li>5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	<p>제4조(사업)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주노동자 병원비 및 생활비 등 각종 지원사업</li> <li>2. 다문화가정 자녀장학금 및 생필품 등 각종 지원사업</li> <li>3.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</li> <li>4. 다문화 및 이주노동자 복지·지원 등 관련 시설 운영 사업</li> <li style="color: red;">5.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단체 지원 사업</li> <li>6.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</li> </ol>
<p>제6조(이익의 제공)</p> <p>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</p>	<p>제6조(이익의 제공)</p> <p>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하며,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.</p> <p>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</p>

<p>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</p>	<p>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③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가 되도록 한다.</p>
<p>제8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	<p>제8조(회원의 권리)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 또한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
<p>제20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20조 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20조(총회의 구성)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. 회원은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</p>
<p>제20조의 2(대의원)</p> <p>① 대의원은 본 법인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서울특별시 10인</li> <li>2. 광역시 및 도지부는 각 5인</li> </ol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부별 총회에 관한 사항은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삭 제</p>
<p>제22조(총회소집의 특례)</p> <p>① 이사장(대표)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</li> <li>2.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</li> <li>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</li> </ol>	<p>제22조(총회소집의 특례)</p> <p>① 이사장(대표)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</li> <li>2.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</li> <li>3.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</li> </ol>

<p>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</p>	<p>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<b>회원</b>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</p>
<p>제23조(의결정족수)</p> <p>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23조(의결정족수)</p> <p>① 총회는 재적 <b>회원</b>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<b>회원</b>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<b>회원</b>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<p>제42조(법인해산)</p> <p>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</p>	<p>제42조(법인해산)</p> <p>① 본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<b>회원</b> 4분의 3 <b>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</b>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</p>
<p>제43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	<p>제43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<b>회원</b>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p>
<p>- 폭넓은 사업을 위해 제4조에 사업을 추가하고, 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을 위하여 공익 목적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을 설명하다.</p> <p>- 또한 민법 42조에 의거하여 정관은 대의원총회가 아닌 회원총회를 열어 변경가능하도록 수정함을 설명하고, 그에 따라 관련 조항을 대의원에서 회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.</p>	

- 의장은 이상으로써 총회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.  
(회의 종료 시간 16시 10분)

2023년 6월 30일 사단법인 일일시호일



의장 대표권있는 이 사 김 형 규



이 사 심 정 섭



이 사 이 재 형



이 사 권 오 영



이 사 남 배 현



※ 2023년 회원 총회

